

報 道 參 考 資 料

제 목 :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6개월 연장

- ☐ 홍콩 · 런던 ·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등 국가 IR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현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
 - 4.28일 19시(현지시간) 뉴욕에서 특파원 만찬간담회를 가졌음
- ☐ 이 자리에서 이현재 부총리는 금년 6월말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(투자금액의 15%공제) 적용시한을
 - 금년 12월말까지로 6개월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음

資料生産課 : 租稅支出豫算課 ☎ 2110 - 2311~13

(과장 성수용, 사무관 김지훈)

財政經濟部 稅制總括審議官
公 報 官

1.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내용은?

- 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2003.7.1부터 2004.6.30까지
투자액에 대하여는 시설투자액의 15%를 법인세 또는
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음
- 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6개월 연장하게 되면
 - 금년말(2004.12.31)까지의 투자에 대하여 15% 세액공제를
받을 수 있게 됨

※ 최근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현황

<u>적 용 기 간</u>	<u>투자세액공제율</u>
○ 2001.1.1~2003.6.30	투자액의 10%
○ 2003.7.1~2004.6.30	투자액의 15%

2.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이유는?

- 최근 기업의 설비투자가 2월중 7개월만에 상승세로 반전하였으나 3월에는 다시 감소하는 등

* 설비투자추계(%전년동월비) : (03.12)△1.6→(04.1)△3.2→(2)2.1→(3)△6.8

- 설비투자가 아직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고
- 원유가와 원자재가격상승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

-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6개월간 연장함으로써

- 설비투자 촉진을 통해 경기회복과 성장기반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임

※ 최근 산업활동 동향

- 산업생산(%전년동월비) : (03.12)10.9→(04.1)4.7→(2)16.9→(3)11.6
- 제조업 평균가동율(%) : (03.12)80.4→(04.1)80.4→(2)83.4→(3)80.7
- 설비투자추계(%전년동월비) : (03.12)△1.6→(04.1)△3.2→(2)2.1→(3)△6.8
- 국내기계수주(%전년동월비): (03.12)△9.1→(04.1)12.9→(2)12.7→(3)30.1
- BSI
 - 〔 전 경 련) : (03.12) 98.7→(04.1) 99.8→(2) 104.9
 - 〔 기업은행) : (03.4/4) 108→(04.1/4) 97→(2/4) 106

3. 적용시한을 6개월만 연장하는 이유는?

□ 2005년부터는 법인세율 자체가 2%p 인하되므로

○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004.12.31까지로 함

<u>과세표준</u>	<u>현 행</u>	<u>2005.1.1부터</u>
1억원 이하	15% →	13%
1억원 초과	27% →	25%

4.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?

□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아래 27개 업종에 대하여 적용됨

- 제조업, 광업, 건설업, 도매업, 소매업, 물류산업(6)
 - 연구 및 개발업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, 엔지니어링사업(3)
 - 전기통신업,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(2)
 - 전문디자인업, 포장 및 충전업(2)
 - 방송업, 영화산업, 공연산업(3)
 - 관광숙박업, 국제회의기획업(2)
 - 폐기물처리업, 폐수처리업(2)
 - 종자 및 묘목생산업, 축산업,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(3)
 - 의료업, 노인복지업(2)
 - 컴퓨터학원, 뉴스제공업(2)
- (27개 업종)

5.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는?

- 제조업 등 : 기계·장치등 설비투자
(토지·건물·차량운반구·비품은 제외)
- 건설업 : 포크레인·불도저·덤프트럭 등 중장비도 가능
- 도·소매·물류업 : 창고·컨테이너등 물류시설도 가능
- 관광숙박업·국제회의기획업 : 건물 및 승강기·중앙
조절식 에어컨등 건물부착설비도 가능

6. '04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10억원, 설비투자 10억원인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음으로써 세금이 얼마나 경감되나?

<세부담 비교> : 투자가액의 15%인 1.5억원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음

임시투자세액공제가 없는 경우	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
○ 과세표준 10억원	○ 과세표준 10억원
○ 납부세액 2.58억원	○ 납부세액 1.08억원
· 1억원×15% = 0.15억원	· 2.58억원-임투공제액1.5억원
· 9억원×27% = 2.43억원	· 임투공제액 : 10억원×15% = 1.5억원
	※ 세금경감액 1.5억원

7.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가?

○ 최저한세가 적용됨

* 최저한세제도란?

기업이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도 과세소득의 일정을 상당액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세감면이 특정인에게 치우치지 않고 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

* 최저한세율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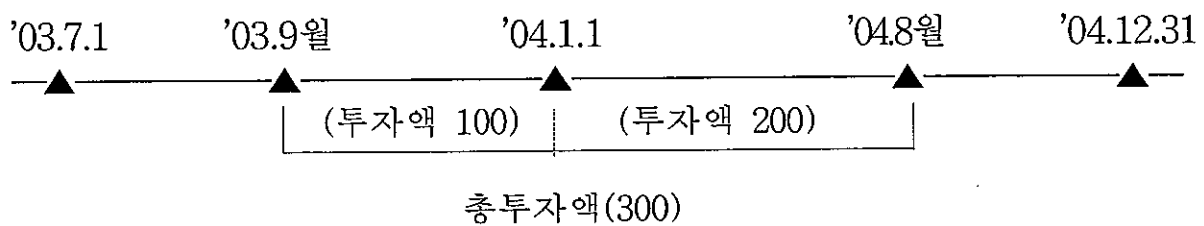
- 법인 ☐ 대 기업 : 세제지원前 과세표준의 15%
 ☐ 중소기업 : 세제지원前 과세표준의 10%
 - 법인세율: 1억이하 15%, 1억초과 27%
- 개인 : 세제지원前 산출세액의 40%(소득세율 9~36%)

8. 최저한세로 인하여 투자한 당해연도에 세액공제를 모두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?

○ 다음 5개연도에 걸쳐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

9. 투자가 2개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의 적용
방법은?

<사례> ['03.9월 기계장치에 투자개시 후
'04.8월 투자가 완료된 경우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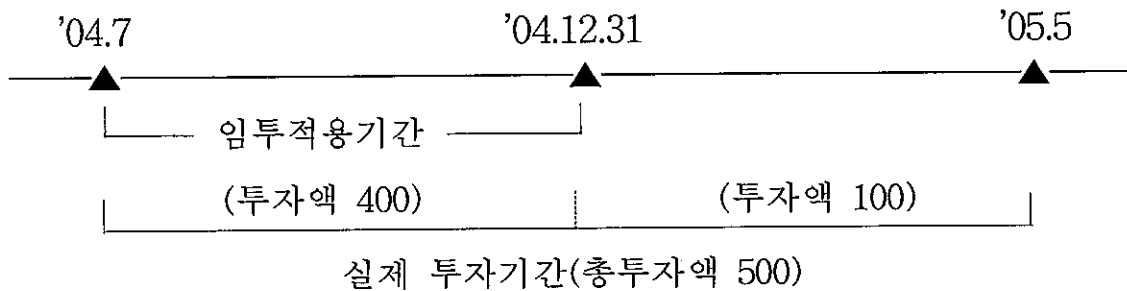


① '03년 투자분 → '03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
(100)

② '04년 투자분 → '04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
(200)

10. '04년에 투자를 개시하여 '05년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의 적용방법은?

<사례> 『'04.7월 기계장치에 투자개시 후
『'05.5월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』



<적용방법>

- 금년도 투자금액(400)만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(2005.3월)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(2005.5월) 공제받음

11. 어떤 조치를 거쳐서 시행되는가?

-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임